

## 뉴욕시 교육청 불만 제기 및 해결 절차 안내

학부모는\* 어린이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. 학부모, 교사 및 기타 관계자들은 낙오아동방지법(No Child Left Behind Act): 타이틀 I 및 II 파트 A 와 D 및 타이틀 III 와 타이틀 IV 파트 A 에 의해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위반 사실이 의심될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교육청의 관련 불만 제기에 관한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.

### 자녀 교육에 관한 불만을 비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방법:

1. 자녀의 학교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불만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서는 우선 자녀의 교사, 지도 카운슬러, 교감 또는 교장과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. 또한 자녀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. 불만이 있으신 경우 자녀의 학교에 빨리 문제를 제기하시어 담당자가 시기 적절하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2. 교장 또는 해당 학교 교직원이 귀하의 불만을 해결할 수 없거나, 귀하께서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주십시오. 자녀가 장애학생이고 해결되지 않은 특수교육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311 로 전화하여 특수교육 콜센터로 연결을 부탁드립니다. 특수교육 콜센터의 직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드릴 것입니다.

###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방법:

교육감이 정한 다음의 불만 및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지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교육감 규정서는 <http://schools.nyc.gov/RulesPolicies/ChancellorsRegulations/default.htm> 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교육감 규정서 사본은 자녀의 학교 또는 가정참여 지원실(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: OFEA)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거주지에 의거한 타학교 전학 요청은 교육감 규정서 A-101 참고
- 체벌에 대한 불만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420 참고
- 교장 또는 교육장 정학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443 참고
- 원하지 않는 전학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450 참고
- 진급관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501 참고
- 학교리더십팀 선거에 대한 불만 및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655 참고
- 학부모회 및 회장위원회 선거, 분쟁, 조치 및 조치 소홀에 대한 불만 및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660 참고
- 번역 및/또는 통역 서비스 미비에 대한 불만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663 참고
- 예방접종 면제 거부에 대한 불만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701 참고
- § 504 계획의 소개, 평가, 개발 및/또는 수행에 대한 불만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710 참고
- 홀리스 학생 또는 임시거주지에 살고 있는 학생의 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780 참고
- 통학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격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801 참고

---

\* 본 규정서에서 사용된 “학부모”라는 표현은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, 또는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 관계에 있는 사람, 또는 학생이 18 세가 되었거나 독립된 미성년일 경우 학생 자신을 의미합니다.

-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식사를 제공받는 자격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810 참고
-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의 기록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해당 기록 수정 요청은 교육감 규정서 A-820 참고
- 차별에 대한 불만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A-830 참고
- 정보자유법에 의거해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 기록에 대한 열람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D-110 참고
- 지역 교육 위원회 위원의 후보 추천 및 선택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D-140 참고
-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위원의 후보 추천 및 선택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D-150 참고
-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위원의 후보 추천 및 선택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육감 규정서 D-160 참고

귀하의 문제가 교육감 규정서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없거나 귀하의 불만이 낙오아동방지법안에 의해 운영되는 연방 프로그램의 위반에 대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: \*

#### 학교 차원:

- A.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 행정 사무실에 가정참여 지원실(OFEA) 불만접수양식(Intake Form)을 요청하십시오.
  - B. 귀하의 불만 내용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자녀나 자녀의 배제와 관련해 교육청에서 수립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학교에 관한 문제인 경우 즉시 교육감실/OFEA 에 **(212) 374-2323** 으로 연락해 주십시오.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귀하를 대신해 가정참여 지원실에 연락을 취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.
  - C. 귀하의 불만 내용이 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시면 OFEA 불만 접수 양식을 직접 해당 학군 사무실의 학군 가정 대변인(District Family Advocate: DFA)께 접수하셔도 됩니다. 학군 가정 대변인은 본인이 직접 다룰 사안인지 또는 학교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인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.
  - D. 귀하의 불만 내용이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것이나 민감한 사안이 아닌 경우,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불만을 접수하는 대로 면담 약속을 잡아 귀하와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입니다.
- 이후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학교 교직원 중에 귀하의 불만을 처리할 책임자를 선정하여 추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- E. 귀하의 불만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면,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즉시 귀하의 불만 내용을 학군가정 대변인(DFA)에게로 넘길 것입니다.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귀하의 불만 내용이 학군가정 대변인(DFA)에게 의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할 것입니다.

---

\* 이 절차는 타이틀 I 과 II 파트 A 와 D, 타이틀 III 와 타이틀 IV 파트 A 하의 프로그램 운영의 위반에 대한 학부모님의 이의 제기에 해당됩니다. 이 프로그램 운영의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교사, 기타 이해단체 또는 기관 또한 위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**학군 또는 보로 차원:**

일단 귀하의 불만이 접수되면 지역 또는 고등학교 교육장을 대신해 학군가정대변인(DFA)이 귀하께 연락하여 사안을 논의하고 귀하 및/또는 학교 교직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. 그 후 학군 가정 대변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 이 과정에서 학교, 학군 및 보로 차원의 담당관과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.

학군 가정 대변인이 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안은 교육감실/가정참여 지원실(OFEA)에 넘겨져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될 것입니다. 이 때, 사안이 의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통보 받으실 것입니다.

### **중앙 교육청 차원:**

교육감 사무실/가정참여 지원실(OFEA)에 귀하의 사안이 의뢰된 경우 중앙 교육청 직원이 불만 해결을 위해 귀하와 함께 노력하며 결과에 대해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.

### **불만 접수 시기 및 처리 기간:**

문제가 발생할 경우, 즉시 적절한 학교나 학군, 보로 및/또는 교육청에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교육청 담당관이 귀하의 불만을 시기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. 학군, 보로 또는 교육청 직원이 문제해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,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 검토 및/또는 해결에는 30 일이 초과되지 않을 것입니다.

귀하의 불만사항이 자녀가 특정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 것(위 참조)과 관련된 것이라면, 이 문제는 귀 자녀가 즉시 등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입니다.

불만 처리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이 문제가 완전히 조사되거나 해결되기 전에 이로 인해 귀 자녀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학교, 학군, 보로, 또는 교육청 직원이 판단할 경우, 교육감실/가정참여 지원실(OFEA)에서는 귀 자녀를 돕고,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
### **이의 제기:**

뉴욕시 교육청의 타이틀 I 위반에 대한 결정 관련 이의 제기 검토 또는 불만 해결을 위한 뉴욕주 교육부의 서면 불만 및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 
<http://www.emsc.nysed.gov/nyc/ComplaintProcedures.shtml>

### **기록 보관:**

가정참여 지원실에서 작성된 불만접수양식의 사본을 보관합니다.